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49
----------	-------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조승환·이성권·유용원
곽규택·인요한·권영진
김성원·김은혜·김태호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교 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설립·경영자로 하여금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

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
8제3항,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 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를 관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

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12(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0조의11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학생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30조의11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30조의11제3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③ 제30조의12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u> <u>-----.</u> 제30조의1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u>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학생의 안전을 위</u>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
교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
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
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
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 또
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하
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설치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
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신 설>

영상정보의 보관 기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
한다.

제30조의12(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를 설
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30조의11제3
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
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
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
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
령에서 정하는 학생의 안전업
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 시기·절
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는 제30조의11제3항의 영상정
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
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
교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
의 열람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30조의11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7제5항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3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
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
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30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68조(과태료) <u><신설></u>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0조의12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